법」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같은법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시스템 동바리 설치·해체 안전작업 절차

시스템비계 설치·해체 작업은 <그림 2>와 같이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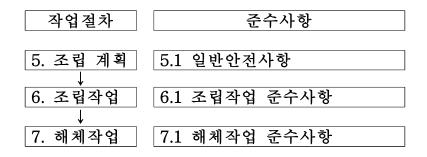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 시스템 동바리 설치 · 해체 작업절차

5. 조립계획

5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은 작업단계별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·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.
- (2)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,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.
- (3)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동바리는 관계전문가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따른다)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.
- (4) 시스템 동바리 조립도에는 동바리·멍에 등 부재의 재질·단면규격·설치간격 및